

장애아보육정책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김 영 숙*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요 약》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서는 장애영유아의 교육지원에 핵심을 두고 담당 전문가를 ‘교원자격증을 지닌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의 연령을 특수교육대상기준으로 본다면, 보육연령대상인 0세에서부터 학령기 전의 장애영유아는 보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아보육을 담당할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보육정책에 따른 법적 근거와 장애아보육시설과 장애아보육을 맡고 있는 교사의 현황, 현재 실행중인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 그리고 장애아 부모의 보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장애아보육전문가’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영유아보육의 질적인 지원을 위한 토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보육정책,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교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 와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구조의 다양화,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은 질적인 보육지원과 보육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아가서 자녀양육에 따른 교육과 보육의 경제적 부담은 결국 대부분의 개별적인 부모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인 책무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실질적인 보육기관의 확대의 필요성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특히 20세기에는 보육시설이 대폭 증가 설치되었다.

더욱이 보육지원에 대한 대부분이 개별아동중심의 지원보다는 보육시설중심의 지원이 되다보니 재정적 보육료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렴한 재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것이 국공립보육시설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 교신저자(ysk@dcu.ac.kr)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보육시설들이 생명에 기초를 둔 보육정책이기보다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인간의 감성이 결여된 보육정책으로 보육을 ‘생산’적인 관점에서 실행하다보니 보육료지원, 보육교사의 위상, 보육내용의 질적인 지원 등의 영역에서 ‘보육부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김정희, 2007).

특히 1998년부터는 보육시설의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이에 비해 질적인 보육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개인의 질적인 보육지원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다(뉴스투데이, 2007).

“2004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했다. 민간시설보다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시설과 서비스는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공립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2%. 100곳 중 5군데에 불과하다. ... 민간 보육시설은 1998년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양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반신반의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보육기관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가족의 부담을 보완해 주는 가족지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연령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믿고 자녀의 보육을 맡아 줄 시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상담란에 올라온 한 상담 내용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과 보육의 어려움을 대신해 주고 있다(뉴스투데이, 2007).

“맞벌이라서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종로구 송인동에서는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고 있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 신청해 놓은 구립 어린이집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난감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장애영유아자녀를 둔 가족(부모)에게는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동시에 장애자녀의 양육과 전문적 보육을 맡기는데 더욱 큰 어려움으로 남게 된다. 보육(保育)은 어린 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며 기른다는(nurture)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까지 ‘탁아(託兒)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호와 교육의 통합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육의 의미는 일반영유아뿐만 아니라 장애영유아의 전체적인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장애자녀를 양육하는데 보다 희망을 기대하게 해 준 지원정책제도의 출발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보육대상 연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장애영유아를 둔 가족들에게는 이전에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지원에 국한되어 있던 교육지원이, 조기교육연령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그리고 장애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수학

급에의 배치와 관련하여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 그리고 동법 제27조에 연차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장애영유아지원에 대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서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의 별도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동법 제35조에서도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과 동시에, 장애영유아는 발달에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발달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후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애영유아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와 전문적 자격을 갖춘 교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권기욱, 2006).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애영유아의 발달에서 조기발견이나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학령기 이전의 보육연령대상에 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의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특히 신체적, 지각적, 언어적, 인지적 영역 및 사회적·정서적 영역 중 어느 한 발달영역이 지체된 아동에게는 발달의 촉진, 장애의 극대화 감소, 2차적 장애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조기발견과 조기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아보육시설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서문희, 2002; 조향미, 2004; 나정, 문무경, 심은희, 2005).

이에 실제 장애아보육시설(장애아전담시설과 장애아통합시설)에서 장애아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장애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특수보육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아 개인의 전체적 삶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발달기에 전문가의 질적인 보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아보육전문가'의 현실적 고찰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에 따른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보육시설이나 보육교사자격 등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비해,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에 따른 양성제도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현장에서의 장애아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비추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문헌적 연구에 폭넓게 기초하지 못하고 정책적인 법적 근거와 장애아보육의 실제적 현황 그리고 장애아부모의 보육지원요구에 대한 숙고에 제한하여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보육정책의 법적 근거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제도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둘째, 장애아보육의 현황과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의 실재를 통해 장애아보육전문가제도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셋째, 장애아가족의 특수보육적 요구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제도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II. 장애아보육정책의 법적 근거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의 필요성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 제도’의 필요성

유치원은 오랜 세월동안 보육적 과제와 함께 교육적 과제를 충족시키는 교육제도의 기초영역으로서 사회교육기관의 한 영역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이 일반 유아교육기관(유치원)과 똑같은 가치로 평가된다면, 교육체제의 기초영역인 출생에서부터 입학전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가정 외의 보육시설에서 전체적(全體的)인 발달지원을 위한 보육제도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적으로 유아를 위한 전체적(全體的) 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유아가 심도있고 지속적인 질적인 보육의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보육정책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008년 새 정부가 내놓은 슬로건 중 하나가 아동보육에 대한 보육정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중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시대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동년 5월 26일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호 그리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동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의무교육(동법 제3조, 시행령 제2조)과 장애영아의 교육지원(동법 제18조, 시행령 제13조),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에 따른 진단·평가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관련(동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보육시설(장애아보육시설)과 보육교사(시행령 제15조)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구, 「특수교육진흥법」(2007년 5월 25일 폐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새로운 법률에서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이 한층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서는 더 나은 장애아보육환경의 제공과 장애유아의 특수교육교사(유아특수교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대상 아동의(만3세 이상 학령기 이전) 교육지원을 중심에 두었으므로 보육대상 연령인 0세에서부터 학령기 이전까지의 장애영유아를 책임지고 보육할 수 있는 ‘장애아보육전문가(또

는 장애아보육교사)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교육과 보육은 각기 교육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책임산하가 다르므로 새로운 법률에서는 교육부소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육적인 내용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질적인 교육과 보육지원은 교육과 보육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연계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교육전문가나 정책담당자는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 기능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상호적인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는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장애영아의 진단·평가를 통한 교육적 배치에 대해 '특수학교의 유치원과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로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영아학급이 장애아보육시설을 의미하고,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있는 학급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연령의 장애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책무자에 대한 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단지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교사 배치관련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실제 3세 미만의 영아는 단순한 교육대상의 연령이 아니라, 보호(care)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연령이며, 더욱이 장애를 지닌 영아라면 장애영역과 장애정도, 장애특성 등에 따른 보호와 돌봄이 있는 개별적 장애아보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발달, 장애와 장애아보육에 대한 이해,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책무성을 지닌 전문가(장애아보육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3세 미만의 장애영유아의 적절한 보육지원을 위한 장애아보육의 전문가적 과정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8조 제3항에서는 장애영아가 기관 내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제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담당교원을 특수학교 유치원교사자격

증을 지니고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두고 있다. 그러나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교육대상이 아니며, 또한 특수교육대상연령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치원교사가 이 연령의 영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교육과 보육의 어느 측면으로나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5조 (보육시설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시설(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시설이라 함은 보육시설(장애아통합시설 지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소지의 특수교육교사 외의 보육교사는 일반보육교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장애아 3명에 대한 보육은 일반보육교사가, 또한 교육대상연령의 장애아에게는 유아특수교사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실제로 일반보육교사가 장애아보육에 대한 전문가적 자격이나 사전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아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장애아가 일반보육교사에 의해 보육을 받고 있는 지원체계나 보육체계 등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2008년 새로 만들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영유아의 교육측면에 대한 지원접근을 하고 있지만, 생애주기의 0세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애영아의 전체적(全體的)이고 종합적인 지원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육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과 생존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며(김기룡, 2008), 이것은 장애아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보육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가 인권적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숙고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를 지닌 영유아의 교육권과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질적인 장애영유아보육지원에 따른 전문가 제도가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장애아보육 전문가(교사)제도'의 필요성

장애아에게 있어서 개별적인 발달과 욕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보육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형제의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는 장애자녀가 외부의 환경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보육과 교육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실행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애영유아의 조기촉진이나 조기중재는 의학적, 교육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재활적 지원의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더욱이 발달단계 상 장애위험에 놓여 있는 한 유아의 발달을 그의 생활환경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중요시기에 동반해 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schlack, 1995).

이에 장애영유아 보육을 맡고 있는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태도 그리고 가치관은 한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요소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아보육교사는, 장애아가 비장애아동이 서로 다른 개별 특성을 지닌 것처럼 장애아동도 개인마다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개별성을 수용하고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장애영역, 장애정도 등에 따른 보육지원을 책임지고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가(장애아보육교사)제도의 구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을 책임질 장애아보육전문가양성과정이나 자격증제도의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법적 근거에서 찾아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동법 별표 1 참조/2008 영유아보육지침 참조).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관련 복지나 재활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역할로는 미흡함이 있다. (2)의 경우는 실제 현장경험에 따른 장애아보육과 관련하여 장애나 장애아보육에 대한 현장경험은 있지만, 사전의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3)은 단순히 단기간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연수를 받은 대상에게 장애아의 보육을 책임지운다는 것은 비장애아의 전문가적 보육지원과 비교해 볼 때 평등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서 1항에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별표 2 참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008 영유아보육지침 참조).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위에 제시된 항목에서는 실제 장애아와 교사비율을 3:1로 두고 있지만, 일반보육시설에서 비장애아가 전문적 자격을 갖춘 일반보육교사에 의해 질적 보육을 받는 동안, 장애아는 장애아보육시설에서 대부분 일반보육교사에 의해 (특히 장애아 3인 이하일 경우에는)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이것은 실제 일반보육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장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장애아의 특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문제 그리고 장애아 개별적 지도와 문제행동의 대처와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인한 부담이 작용하여, 결국은 장애아 개별발달지원과 질적인 보육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희경, 이승희, 2007; 이혜숙, 2007). 그러므로 장애아 보육의 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정계순, 2006).

특히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는 장애의 경미한 정도부터 심한 장애아까지 일반통합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장애아들이 대부분이므로 실제적으로는 더욱 장애아보육전문가의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재는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과제이다.

1977년 구,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에서부터 2007년 폐지까지 그리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로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영유아보육’과 ‘장애아보육전문가 제도’(장애아보육교사 또는 특수보육교사)에 대한 정책적인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 정부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 하위내용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보육료 지원증가, 장애수당 증가, 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새 정부가 장애아보육의 중요성과 장애아의 조기적 지원을 주요정책사업으로 노력한다면 장애아보육전문가제도는 질적인 장애아보육지원의 첫 번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 장애아보육의 현황과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 실제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의 필요성

1. 장애아보육의 현황에 근거한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현실과 장애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실은 당사자와 관련가족들에게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장애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부모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린 장애자녀의 보육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어서 부모 중 한쪽 부모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거나, 반대로 자녀보육과 양육을 위한 부모양쪽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보육연령에 있는 장애자녀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를 놓치게 되어 장애의 악화나 제2의 장애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장애아를 위한 질적 보육과 부모들이 부딪히게 되는 양육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는 바로 장애유아의 발달촉진의 보육교사역할과 2차적 장애예방이나 장애극복을 위한 특수교육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장애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는 장애유아에 대해 전문적 양성과정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보다 더 많은 역할과 업무부담을 감수하게 된다(이혜숙, 2007).

199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장애아보육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고, 장애아보육에 대한 규정이 1996년 신설되면서, 1997년부터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관한 지정과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장애아보육에 따른 서비스가 공적으로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이계윤, 2005).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제35조 ①항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③항에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을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7년 12월 31일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재 장애아보육시설은 839개소(장애아전담시설 154개, 장애아동이 3명이상 재원하고 있는 장애아통합시설 685개), 장애아동현원이 9,219명(장애아 전담시설 5,887명, 장애아통합시설 3,332명)이다. 우리나라 전국 보육시설 30,856개와 아동현원 1,099,933명과 비교해 보면 장애영유아가 보

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에 비해 약 2.7%이고, 장애아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는 약0.8%이다. 여기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사 수는 전체 3,350명(장애아전담시설:일반보육교사 1,310명, 특수교사 564명/장애아통합시설:일반보육교사 1,258명, 특수교사 218명)이며, 이 중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맡고 있는 일반보육교사와 특수교사의 비율은 약 3.3 :1이다.

그러므로 실제 장애영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는 782명(일반보육교사는 2,568명)으로 장애아전담시설의 장애아동과 특수교사 수의 비율은 약 1:10이고, 장애아통합시설은 약 1:15로, 이것은 실제 장애영유아(중증의 장애영유아 포함)에 대한 특수교사의 열악한 현실과 그들의 과중한 부담을 내포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보육통계 연감, 보육상세통계 및 전국특수보육시설현황, 2008).

<표 1> 우리나라 장애아보육의 현황>

(단위:개, 소, 2007년 12월 31일 기준)

| | 장애아전담 | 장애아통합 | 전국보육시설 |
|-----------|----------------------------------|-----------------------|-----------|
| 시설 수 | 154 | 685 | 30,856 |
| 아동현원 | 5,887 | 3,332 (비장애아46,005) | 1,099,933 |
| 보육교사 | 1,310 | 1,258 | 122,262 |
| 특수교사 | 564 | 218 | - |
| 유치원교사유자격증 | 2003년 24,309명/이후는 통계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 | |

* <http://stat.mw.go.kr/>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보육통계 연감」/보육상세통계/전국특수보육시설현황 2008)

* 장애아통합시설:장애아동 3명이상이 재원하는 시설만 표기출처

실제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일반보육교사에 비해 장애아와의 관계, 동료 보육교사와의 관계, 업무, 대우 등에서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정순옥, 2007). 장애아보육시설에서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보육전문가는 실제적으로 일반보육교사의 약30%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아전담시설은 원아 모두가 장애를 지니고 있는 영유아이고 그 장애정도는 경도에서 중증까지라고 볼 때 일반보육교사가 특수교사의 약 3배 이상으로 보육을 맡고 있으므로, 사실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일반보육교사에게 70%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보육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교사에게 있어서 보육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사의 유능감이나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장애아의 지도와 보육효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이혜숙, 2007).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질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문제와 장애영유아의 장애아보육전문가(교

사)제도와 양성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연감에 따르면(2007년 12월 말 기준) 전국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치원교사자격소지자는 2003년에는 24,309명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이후로는 통계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유치원은 교육부소관으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대부분의 교사는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보다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때, 장애아보육시설에서는 대다수의 일반보육교사가(1급~3급) 장애영유아보육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보육'을 책임질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 제도 뿐 아니라 양성제도의 대안이 요구된다.

2.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은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의 대치제도인가?

2007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보육에 따른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이 발급하는 인정서)를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의 자격범위로 제시하였다. 여성가족부(현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 제도의 일환으로 '자격기준'에 따른 이수과목과 이수학점(8과목이상의 20학점이상)의 기준과 졸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인정서'의 내용을 안내하였다(2007년 「보육사업안내」). 그러나 이 공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특수교사제도'와 동등한 자격제도로 잘못 이해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 야기로 인해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제'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2007년 5월 22일 여성가족부(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제'가 아닌,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 자격인정'으로 재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자격기준의 이수과목 증가와 이수학점이 수정되었다. 이수과목이나 이수학점은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에 따른 다양한 이수과목의 확대와 이수학점의 융통성이 보완되었다고 보이지만, 장애아보육전문가로서의 '제도'적 체제는 사라진 것이다.

즉,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은 자격인정제도로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보육기관에 취업할 때 구청 등 해당관청에 보육특수교사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로 '유사교과목확인서(대학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특수교사자격인정관련 이수교과목 중 8과목 이상 16학점 이상)'를 제출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은 국가적 제도차원에서 '자격인정제도'가 아닌 보육기관(장애아보육시설 포함)의 채용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국가정책에 대한 안내와 정보조차도 해당관청에 따라 무지한 경우도 나타나, 기준을 충족한 자가 오히려 해당관청에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 역의 경

우도 속출하고 있다. 또한 설사 이 기준에 준한 자격을 충족시킨 자라 하더라도 보육기관에서 채용의사가 없으면 정책적인 제도가 없는 한, 유명무실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장애아보육'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대우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장애영유아 개인과 가족에게 장애아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질적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의 기초와 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가리킨다.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에서 많은 사람들은(현장 특수교육교사, 특수교육관련 전문가 등) 제일 중요한 것으로 조기발견과 조기교육 조기중재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 우리의 현 정책제도는 장애영유아의 출생과 함께 가장 먼저 마련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를 소외시키고 외적인 요소들(보육료지원,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 정부가 내 놓은 '장애인정책에 따른 지원의 강화와 확대'에 포함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서비스에서 가장 기초적인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을 그저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의 대치제도로 그냥 머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숙고와 제고가 필요하다.

IV. 장애인가족의 특수보육적 요구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숙고

어느 누구도 장애아를 가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가족은 없을 것이다. 장애인 개인으로서나 가족구성원에게 장애인과 함께 그리고 장애와 함께 하는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고 사건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장애인가족은 장애아를 만나게 된 처음과 양육과정의 상황은 다양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이 우선적인 지원이 되며,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 가족은 매일 24시간 동안 장애와 자녀와 실제적 어려운 경험을 쌓는 사람들이다.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는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서의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통한 장애아의 발달촉진과 가족지원이 필요하다(이혜숙, 2007). 또한 대부분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장애자녀의 조기보육의 질적인 경험을 원하고 있으며, 부모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정계순, 2006).

한 가정에 장애아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견하게 된다. 실제 이러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표현한 한 장애인 부모의 "장애아 부모에게"(Finger u. Steinbach, 1992)라는 글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장애아를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다. 그 충격은 가족에게 실망, 슬픔 그리고 분노로 표출되었다. 우리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 당시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들과 부딪혔고 엄청난 상황을 경험했다. 우리가족들 대부분은 나의 장애아이의 출생과 함께 이전에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끝없는 문제들과 질문들이 우리를 덮쳤다. 우리는 삶이 지속해서 이어질 것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고, 다시 정상적이니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없는 멍한 시간들을 얼마동안.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사실이 아닐거라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정상일거라는 추측과 상상 속에서 헤매었다. 동시에 엄청난 불안감이 우리를 덮쳤다. 그렇지만 아이가 장애아라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항상 그를 내쳤다. 우리가족은 그 사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를 위해 뛰어다녔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문속으로 빠져들었다. : 우리는 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우리가족에게 어울리는 구성원이 될까? 또는 이 아이는 우리의 공동체적 가족의 삶을 방해할까? 우리는 과연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우리는 그저 자신을 숨기는데 급급했다. 동시에 우리는 아이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감추게 되었다.

장애아의 부모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비장애아부모에 비해 심리적인 무기력감, 죄책감의 고통을 안고 있으며(이상복, 1998), 또한 장애자녀의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자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는 과도한 보호심리가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이혜숙, 2007).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요구조사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장애아 수에 비해 전문가(교사)가 부족하며, 장애아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적인 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정계순, 2006).

다음 내용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자녀의 교육권과 보육권 보장을 위해 각종 모임과 농성을 함께 지지하고 있는 한 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김형숙, 2008).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가족이 몽땅 올라왔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언제까지 아이를 내 품에서 키울 수도 없으니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것이 제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가족과 부모는 장애자녀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을 해 본다면, 많은 관련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답변이나 위로의 지식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가족에게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사전적 정보나 예측없는 상황에서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이것은 장애아의 출생과 바로 시작되는 보육지원이고, 이를 책임질 ‘장애아보육 전문가(교사)’이며, 이들은 장애아를 위한 조기중재와 조기촉진의 역할을 장애인가족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실행해야 한다(Krebs, 1997).

장애아의 조기중재나 조기촉진은 복합적인 의학적, 교육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재활적 지원을(schlack, 1995) 의미하며, 발달상 위험에 놓여있는 한 아이의 전체적 삶의 중요한 발달단계를 지원해 주고 동반해 준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는 장애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대상이다.

V. 결 론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는 한 개인의 삶의 시작과 발달초기단계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장애영유아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특성,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전문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영유아보육정책에는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보육의 질적인 보육의 제도적 체계마련을 위한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의 필요성을 법적근거와 보육시설의 현황, 현재 실행중인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 그리고 장애아부모의 요구에 대한 숙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는 장애아보육지원이나 내용은 포함되고 있지만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나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정책적 내용이나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를 일반보육교사제도와 비교해 볼 때 불평등과 불공정성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한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장애아보육기관(장애아전담시설과 장애아통합시설)에서 장애영유아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는 일반보육교사가 특수교사의 약 3.3배이다. 장애아보육시설에 종사하면서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맡은 특수교사는 일반보육교사의 약30%정도밖에 미치지 않으며, 동시에 장애영유아 보육을 특수교사에 비해 일반보육교사에게 70%이상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장애영유아보육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는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시설의 경우 각각 교사1인 대 장애아 10명과 15명이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일반보육교사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사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과중한 부담을 시사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보육통계 연감, 2008). 이것은 장애영유아의 질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와 장애영유아보육의 장애아보육전문가의 전무(장애아보육교사)제도에 대한 요구를 시사한다.

셋째, 일반보육시설에서 비장애아가 전문적 자격을 갖춘 일반보육교사에 의해 질적 보육을 받는 동안, 장애아는 장애아보육시설에서 대부분 일반보육교사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 부재의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유아의 장애 영역과 정도,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과 부모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절한 교육환경에 배치하여야 하는 절차와 책임기관 혹은 위원회가 없다. 전국에 100곳이 넘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지 못한 채 보육교사에게 장애아동 교육을 맡겨놓고 있다”. ...“... 여성가족부는 장애 유아에 대한 특수교육이나 조기중재를 전공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보수교육조차 받지 않은 채 장애아동의 담임교사가 되어 그들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유아기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 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고려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켜 장애를 최소화하기보다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보육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정미, 2007).

넷째, 장애아의 발달단계에서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만큼, 장애위험에 놓여 있거나, 장애를 지닌 영유아에게는 적절한 보육적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가(교사)가 요구된다.

이는 보육이 단순한 돌봄의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위험에 놓여 있는 영유아나 장애영유아에게 개별적 장애정도, 장애특성, 장애유형 등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발달로의 지원안내 또는 장애의 극대화, 제2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육정책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에 대한 대안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아 보육교사는 일반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는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장애아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지도능력, 그리고 장애와 특수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식의 기능이 더 필요하다. 더욱이 교사의 태도와 가치관과 철학은 학습대상의 전체적인 발달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장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수용능력은 결국 장애아의 성격발달, 정서발달, 심리발달 등의 전체적 발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장애아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는 장애아를 위한 최적의 보육환경과 양질의 장애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에 대한 요구성 수립은 장애아부모 개인, 장애아, 특수교육관련전문가가 각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질적인 장애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장애아보육권의 공공성 확보와 평등한 보육권을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전문한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와 전문가양성제도의 정책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의 상호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가와 사회는 장애아에게 출생에서부터 질적인 보육권을 위한 법적체계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장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희경, 이승희(2007). 장애아보육시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7권 4호.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363-384
- 권기욱(2006).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 개선방향.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2월호 제7권 4호. 1-26
- 김기룡(2008). 특수교사 없이는 장애인 교육은 없다. **함께 걸음** 11월호. 44-49
- 김송석, 마주리, 황정남(2006). **발달 및 지도 특수아동지도**.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 김정희(2007). 21세기 보육정책의 방향. 한국여성연구소
- 김형숙(2008). **함께 걸음**. 1월호. 12-13
- 나정, 문무경, 심은희(2005).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양서원
- 뉴스투데이(2007). 보육정책리포트. 국정브리핑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보육사업안내(2007).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통계 연감(2008).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상세통계 및 전국특수보육시설현황(2008). 보건복지가족부
- 서문희(2002). 장애아동 보육현황과 정책과제. In: 정책분석. **보건복지포럼**, 63-75
- 서울정보보육센터. <http://children.seoul.go.kr/>
- 영유아보육지침(2008). 보건복지부. 2008년 02월
- 윤종술(2008). 장애아동을 한 시간도 안 돌봐 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함께 걸음**. 9월호 (42-43)
- 윤종술(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및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필요한 조건.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4월 특강자료.
- 이계운(2002).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에 있어서 무상보육의 필요성. In :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11-14
- 이계운(2005). 장애아동을 둔 취업모의 시간관리 전략과 양육부담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숭실대학교
- 이남식(2008). 장애아보육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아보육정책의 변화.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워크샵 자료.
- 이상복(1998). 대구 경북지역의 장애아와 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 **정서장애학습연구**, 14(2), 22
- 이정미(2007). 「왜냐면」 장애아 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겨레신문** 4월 9일자 사설칼럼
- 이혜숙(2007).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008). 법제처

- 정계순(2006). 부산광역시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영유아보육연구소. 연구보고서
- 정순옥(2007).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보육서비스 요구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경, 이소현(2003). 장애유아통합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및 실행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제37권 4호.3월. 한국특수교육학회. 297-318
- 조향미(2004).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함께 걸음(200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월호
- 함께 걸음(200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9월호
- 함께 걸음(200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1월호
- Engelbert, A.(1994). Familien mit behinderten Kindern. In. Grunow, D./Hurrelmann, K./Engelbert, A.: *Gesundheit und Behinderung im familialen Kontext*. Muenchen 137-179
- Kaiser, Arne/Thimm, Walter(1996). Familienentlastende Dienste in Deutschland. In *Geistiger Behinderung. Lebenshilfe fuer geistige Behinderung* 3. 254-257
- Krebs, Heinz(1997). Ganzheitliche *Fruefoerderung* Geistiger Behinderung. *Lebenshilfe fuer geistige Behinderung* 4. 386-394
- Finger G. und Steinbach, C.(1992). Fruefoerderung. Zwischen passionierter praxis und hilfloser Theorie. Freiburg. Lambertus. In. Heinz Krebs(1997). *Ganzheitliche Fruefoerderung. Geistiger Behinderung. Lebenshilfe fuer geistige Behinderung* 4. 386-394
- Schlack H. G. (1995.). Paradigmentwechsel in der Fruehfoerderung. *Fruehfoerderung interdisziplinaer*. 8. 13-18

A Study on Demands of the 'qualified care-person(teach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Care-politic

Kim, Young-Suk

Daegu Cyber University

<Abstract>

With an established 「Infant Nursery Act」 in 1991, the care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omplish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in Korea.

In additi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Special Education Ac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2008 contains the substance of the education-service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But the new act restricts a person fit for the post, who has a teacher's license, with a charge of 「education-service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On the assumption that the age of a child with disability is a standard of the special education, it is necessary for political system on the 'care-person(teacher)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who will teach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cept for case of suitable age by acts of care-politic, to be improved better than now.

This Study bring up the needs and importance of 'care-person(teacher)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that are based on acts of care-politic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and actual situation on care-institutions, 'a qualified recognition of special-education' and needs of parent,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care-politic, ca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qualified care-person(teach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Act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논문 접수: 2008. 11. 5 심사 시작: 2008. 11. 18 게재 확정: 2008. 12. 22